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-74호

「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」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9월 7일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1. 개정이유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을 위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시민의 체육진흥의 폭을 향상시키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을 추가함(안 제13조).

3. 의견제출

- 가.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행정 자치수석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제출 사항
 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 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주소 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) (전화 042-270-5124, FAX 042-270-5029, E-mail : pil6969@korea.kr)
- 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7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
- 제13조제2항 중 "제7호부터 제11호"를 "제7호의 사용료는 100분의 80을, 제8호부터 제12호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3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생 략) | 제13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현행 |
| | 과 같음) |
| 1. ~ 6. (생 략) | 1. ~ 6. (현행과 같음) |
| <u> <신 설></u> | 7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|
| |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 |
| | 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|
| | <u>활동</u> |
| <u>7. ~ 11.</u> (생 략) | <u>8. ~ 12.</u> (현행과 같음) |
|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 | ② |
| 용료는 면제하고, 제7호부터 제11 | <u>제7호의 사용료</u> |
| <u>호</u> 까지의 사용료는 100분의 50을 | <u>는 100분의 80을, 제8호부터</u> |
| 경감한다. | <u>제12호</u>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
관계법령

체육시설의 설치 ·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- 제4조의2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,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6.8.2.>
 - 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 - 2. 다음 각 목의 단체(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
 - 가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
 - 나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
 - 다. 삭제 <2016.8.2.>
 -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
 - 4. 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 자를 위한 행사
 - 5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 업 또는 방과 후 활동
 - 6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
 - 7.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